

<input type="checkbox"/> 여객자동차운송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대여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		상속신고서	처리기간 5 일
신고인	① 성 명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 소	(전화:)	
④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		(운영형태:)	
⑤ 피상속인과의 관계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5조·제35조·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7조·제71조·제9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			
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 · 도 지 사		귀하	
첨 부 서 류			수수료
			3,000원
1.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신청자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			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